

백인대장 고3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6년 09월 0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 시간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	49	480	1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6	49	600	1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1	49	720	1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6	49	840	21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21	49	960	24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8	49	180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22	49	192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2	49	1440	3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1	49	720	21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2	49	1440	4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3	49	840	2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4	49	1680	5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5	49	960	2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논술6	49	1920	5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3클리닉	49	480	50,000	4주		0
보습단과	파이널모의고사	49	720	16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7	49	2400	5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8	49	2640	5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19	49	240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부수학20	49	2640	450,000	4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6년 09월 01일

(√)학원설립·운영자[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

백인대장 고3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6년 09월 01일 현재

교습과정	교습과목	정원 (반당)	월교습 시간(분)	월교습비(원)	교습 기간 (○월)	기타경비	
						구분	금액(원)
보습단과	고등A1	49	720	22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	49	840	26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3	49	960	3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4	49	1080	33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5	49	1200	37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6	49	1320	41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7	49	1440	4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8	49	1560	4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9	49	1680	5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0	49	1800	55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1	49	1920	5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2	49	2040	63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3	49	2160	67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4	49	2280	71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5	49	2400	74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6	49	2520	78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7	49	2880	8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8	49	3240	1,0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19	49	3360	1,04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0	49	3600	1,1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1	49	3840	1,19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2	49	4200	1,300,000	4주		0
보습단과	고등A23	49	4800	1,490,000	4주		0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6년 09월 01일

(√)학원설립·운영자[(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
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